G - 103 - 2013

인쇄물 묶음 취급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숭실대학교 서상호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관련규격 및 자료
- IACL 106, Advice for newsagents and employees on safe handling of bundles, HSE, 2012
- IACL 105, Handling the news: Advice for employers on manual handling of bundles, HSE,
- H-10-2012,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
- H-23-2011, 유통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103 - 2013

인쇄물 묶음 취급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무거운 인쇄물에 대한 묶음 작업, 이동운반, 상하차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신문, 잡지 등의 인쇄물 묶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근골격계질환"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,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,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, 어깨, 허리, 상·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.
- (나) "분류 작업"이라 함은 인쇄물 묶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.
- (다) "운반 작업"이라 함은 인쇄물 묶음을 인력 또는 운반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옮겨 나르는 작업을 말한다.
- (라) "상·하차 작업"이라 함은 인쇄물 묶음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 신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.
- (마) "적재 작업"이라 함은 인쇄물 묶음을 창고 또는 차량에 쌓거나 싣는 작업을 말한다. 인쇄물을 창고에 넣고 꺼내는 작업도 포함한다.

G - 103 - 2013

- (바) "롤 케이지(Roll cage)"란 작업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제 틀 또는 프레임(Frame)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유해요인

- 4.1 유해요인의 발생 시기
 - (1) 분류 작업 시
 - (2) 운반 작업 시
 - (3) 수송차량에 상ㆍ하차 작업 시
 - (4) 적재 작업 시
- 4.2 작업에 따른 유해요인
 - (1) 부적절한 작업자세
 - (2) 과도한 힘의 사용
 - (3) 불필요한 반복동작
 - (4) 휴식 혹은 회복 시간의 부족
 - (5) 장거리 운반
- 4.3 작업장 환경에 따른 유해요인
 - (1) 천정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은 운반 차량

G - 103 - 2013

- (2) 편평하지 않은 바닥 표면
- (3) 일정하지 않는 작업 강도
- (4) 열악한 조명
- (5) 추위, 습기, 빙판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
- 4.4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해요인
 - (1) 성별 혹은 성숙도 등의 개인별 특성
 - (2) 질병 혹은 상해 경험 유무
- 4.5 유해요인의 조사

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면담,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, 인간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한 유해요인을 조사한다.

5. 인쇄물 묶음 취급 안전대책

5.1 일반사항

- (1) 인쇄물 묶음 취급작업은 신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가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한다.
- (2) 작업량에 적절한 작업자 수를 확보한다.
- (3)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작업 도구 혹은 기계를 사용한다.
- 5.2 분류작업 시 안전대책
 - (1) 인쇄물 묶음을 분류할 때 수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 혹은 기계를 사

G - 103 - 2013

용한다.

- (2) 인쇄물 묶음 분류 작업 시 적절한 작업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를 사용한다.
- (3) 인쇄물 묶음 분류 작업 시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(4) 인쇄물 묶음은 인력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정 크기와 무게로 일정하게 나누어서 묶는다. 인쇄물 묶음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크기와 무게를 적절하 게 맞추어 놓고 사용한다. 인쇄물 묶음의 무게가 무겁거나 혹은 크기가 커 지지 않게 한다.
- (가) 인쇄물 묶음은 가능하면 강한 재질의 끈으로 2중으로 묶는다. 이때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.
- (나) 인쇄물 묶음의 무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따라 무게 5 kg 이상의 경우에는 물품의 중량 등의 안내 표시를 작업장 주변 적절한 곳에 하도록 한다.

5.3 운반 작업 시 안전대책

- (1) 가능하면 인력작업보다 수동 스태커나 핸드 팔레트 트럭이나 컨베이어 등을 이용한 기계장비를 이용한다.
- (2) 인력으로 운반 작업 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지양한다.
- (3) 운반보조장비의 바퀴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- (4) 운반작업을 할 통로는 이동경로를 정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고 운반 동선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.
- (5) 운반작업을 위한 이동통로의 조도는 적정해야 한다.

G - 103 - 2013

5.4 상 · 하차 작업 시 안전대책

- (1) 수송차량 가까이서 상ㆍ하차 작업한다.
- (2) 가능하면 차량 안으로 연결되는 컨베이어를 이용한다.
- (3)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측면과 후면에 문이 있는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적재함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피한다.
- (5) 인력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를 지양한다. 또한, 인쇄물 묶음을 들어 올려 팔을 과도하게 뻗지 않게 한다.

5.5 적재 작업 시 안전대책

- (1) 인쇄물을 분류하여 쌓아 놓을 때 사용하는 박스는 작업하기 수월한 크기로 적절한 높이에 위치해 놓아야 한다.
- (2) 인쇄물 묶음을 적재칸에 쌓을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(3) 인쇄물 묶음을 허리 높이에서 들 수 있도록 작업장을 배치한다.
- (4) 인쇄물 묶음을 묶고 남은 끈들은 바로 치운다. 그것을 방치할 경우 미끄럼 혹은 떨어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- (5) 적절한 조명을 유지한다.
- (6) 작업장 바닥은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, 손수레 등은 가능하면 포장 기계 가까이에 둔다.
- (7) 적재 지역은 차량이나 보조 이동수단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.

5.6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

G - 103 - 2013

- (1) 인쇄물 묶음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신체적,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 예방책을 강구한다.
- (2)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에 문제가 되는 신체적 결함 혹은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한다.
- (3) 작업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, 이를 즉시 알리도록 주지시킨다.
- (4) 작업자가 임산부일 경우 최소한의 위험요소도 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바꾼다.

5.7 기타 안전대책

- (1) 사용 장비의 유지관리
- (가) 인쇄물 묶음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 장비는 양호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(나)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 휠 베어링은 수시로 점검하고, 장비에 끼어 있는 끈 등 이물질은 즉시 제거한다.
- (다) 롤 케이지 등 인력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는 결함보고 체계와 유지관리절 차를 마련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
- (2) 불필요한 작업자세 지양

상해의 위험이 있는 작업들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.

- (가) 작업자의 신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묶음을 잡거나 다루기
- (나) 꼬이거나, 비틀리거나 구부리는 등 어색한 자세

G - 103 - 2013

- (다) 격렬하게 밀고 당기는 동작
- (라) 불필요한 반복동작
- (마) 충분한 휴식 혹은 회복시간 없이 작업하기
- (바) 인쇄물 묶음을 장거리 운반하기
- (3)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
- (가) 위험요소 및 예방책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가 공유하게 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.
- (나) 무거운 인쇄물 묶음 작업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, 교육훈련 시 이러한 장비 사용법이 포함되도록 한다.
- (다) 교육훈련 시에는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한다.

6. 사업주의 역할

- (1) 사업주는 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.
- (2) 작업 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해사고의 유형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시행한다.
- (3)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할 경우 위험성 평가를 재시행하고, 예방책 또한 재검토 한다.
- (4) 근골격계질환은 그 증상과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증상도 기록하고 처치 받도록 한다.
- (5)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
G - 103 - 2013

7.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와 방지책

7.1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

- (1) 무거운 인쇄물 묶음을 운반하거나 차량 등에 적재 시 과도한 힘의 사용
- (2) 운반이나 적재 작업 시의 반복적인 작업자세
- (3) 계단 혹은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리거나 평편하지 않은 곳에서 미끄러짐
- (4)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작업자세
- (5) 상 · 하차 작업 시 손, 손목 등이 운송차량에 부딪힘

7.2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책

- (1) 근로자의 의무
- (가) 가능하면 허리굽힘 동작을 줄이고, 팔꿈치가 몸으로부터 최대한 가깝게 유 지하도록 한다.
- (나) 인쇄물 묶음을 잡고 이동할 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.
- (다) 무거운 인쇄물 묶음은 수레 등 이동수단을 사용하고, 두 사람이 함께 작업 하다.
- (라) 한 번에 들고 나르는 운반거리를 줄인다.
- (바) 발은 어깨 너비를 유지하고 팔과 손목을 몸통에 가능한 가깝게 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와 엉덩이의 힘으로 든다.
- (사) 적재 작업 시 팔과 손목에 과도한 힘과 허리를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G - 103 - 2013

- (아)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(안전화, 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안전장갑)를 착용한다.
- (2) 사업주의 역할
- (가) 순환근무와 같은 다양한 작업방법을 강구한다.
- (나) 작업 일정 및 작업 속도를 조절한다.
- (다) 회복시간 제공한다.
- (라) 적절한 작업공간 및 장비를 제공한다.
- (마) 작업자의 적정 배치를 고려한다.
- (바)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방 안을 마련한다.